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 안 번 호 : 제878호
- 다. 제 출 일 자 : 2023. 5. 30.
- 라. 회 부 일 자 : 2023. 6. 1.

2. 제안내용

- 서울시 균형발전 관련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전출금 정산 등을 위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4,755억 33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6,745억 6백만 원 대비 11.9% 감액(1,989억 72백만 원)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74,506	1,475,533	△198,972	△11.9%
일 반 회 계	223	218	△5	△2.2%
도시개발특별회계	1,674,283	1,475,315	△198,967	△11.9%

나. 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4,385억 90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6,679억 43백만 원 대비 13.8% 감액 (2,293억 53백만 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67,943	1,438,590	△229,353	△13.8%
일 반 회 계	1,578,066	1,348,476	△229,590	△14.5%
특 별 회 계	89,877	90,114	237	0.3%
주택사업특별회계	2,573	2,573	-	-
도시개발특별회계	87,304	87,541	237	0.3%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예산안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총 11.9%(△1,989억 72백만 원) 감액된 1조 4,755억 33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2.2%(△5백만 원) 감추경 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9%(△1,989억 67백만 원) 감추경 되었음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74,506	1,475,533	△198,972	△11.9%
일반회계	223	218	△5	△2.2%
도시개발특별회계	1,674,283	1,475,315	△198,967	△11.9%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5백만 원)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액(△21백만 원) 및 2022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16백만 원)을 반영한 것임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223	218	△5	△2.2%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7	97	-	-
지 방 행 정 제 제 부 과 금	3	3	-	-
국 고 보 조 금 등	123	102	△21	△17.1%
보 전 수 입 등	-	16	16	-

□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1,989억 67백만원) 감액된 1조 4,753억 15백만 원임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674,283	1,475,315	△198,967	△11.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7,835	37,835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447	9,234	5,786	167.8%
지 방 행 정 제 제 부 과 금	1,490	1,490	-	-
국 고 보 조 금 등	4,100	4,100	-	-
보 전 수 입 등	74,788	100,053	25,265	33.7%
내 부 거 래	1,552,620	1,322,600	△230,019	△14.8%

- 도시개발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은 ‘마장청계플랫폼525 도시재생기반 시설’ 매각수입 57억 86백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34억 47백만 원) 대비 167.8% 증가한 92억 34백만 원을 편성했음
 - ‘마장청계플랫폼525’는 2018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 마 장축산물시장 일대에 추진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장축산물시 장의 산업과 환경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주차장의 복합활용 건축 물로 '22.3월 준공되었으나,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마장청계플랫폼 525’ 현장지원센터(4층)의 운영주체가 상실된 채 다른 공용 공간들도 공실로 방치되어 새로운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성동구¹⁾에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먹자골목 정비와 마장축산물 시장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마장청계플랫폼 525’의 도시재생공간(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였고, 관련부서 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 마장청계플랫폼525 시설현황>



시 설 명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위 치	성동구 마장동 525-1,-2,-3
면 적	대지면적: 1,937.7㎡
규 모	지상 5층, 연면적 6,487.89㎡
용 도	주차장(區소유), 도시재생공간(市소유)
사 업 기 간	2021년 ~ 2022년
사 용 승 인	'22.03.30. (도시재생공간 미운영 중)
사 업 비	19,820백만원

구 분	주차장 (71%)		도시재생공간 (29%)			
	용도	전용(㎡)	공용(㎡)	용도	전용(㎡)	공용(㎡)
옥탑	30대	-	59.33	-	-	-
5층	23대	814.16	134.85	오픈키친, 카페	280.88	46.52
4층	21대	814.16	134.85	다목적실, 현장지원센터	280.88	46.52
3층	22대	814.16	134.85	주민편의공간	280.88	46.52
2층	21대	814.16	134.85	공공임대상가	280.88	46.52
1층	관리실	480.86	354.77	냉동창고	332.20	214.42
합 계	117대	4,631.67	-	-	1,856.22	-

1) '마장청계플랫폼525 매각 요청'(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338호(2023.1.16.))공문 시행

-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240억 88백만 원)²⁾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1억 77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747억 88백만 원) 대비 33.7% 증가한 1,000억 53백만 원을 편성했음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의 차이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한한 것으로, 2022년 결산완료에 따른 정산금을 반영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내부거래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³⁾으로 재산세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편성부서:재무국 세무과) 감추경(안)의 70%를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⁴⁾(△2,300억 19백만 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2022년 결산 완료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정산금 미반영액을 계상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2) 세출예산안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조 6,679억 43백만 원) 총 13.8%(△2,293억 53백만 원) 감액된 1조 4,385억 90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순세계잉여금(a-b-c)	98,876	87,888	87,542
잉여금(a)	530,349	401,033	419,430
다음연도 이월액(b)	428,287	311,937	330,863
보조금집행잔액(c)	3,186	1,208	1,025

** 2023 본예산 74,788백만원, 추경 24,088백만원

3) '23.1: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 공시지가 확정 → 전년대비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하락

'23.4: 서울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 전년 대비 5.56% 하락

4)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소예상분의 70% (△260,680백만 원)
20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의 70% (30,660백만 원)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4.5%(△2,295억 90백만 원) 감추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0.3%(2억 37백만 원) 증추경되었음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1,667,943	1,438,590	△229,353	△13.8%
일반회계	1,578,066	1,348,476	△229,590	△14.5%
특별회계	89,877	90,114	237	0.3%
주택사업특별회계	2,573	2,573	-	-
도시개발특별회계	87,304	87,541	237	0.3%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사업이 감추경(△2,293억 53백만 원) 되었으며, 8건의 사업에서 감추경(△2,334억 14백만 원), 8건의 사업에서 증추경(40억 61백만 원)된 것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1조 6,679억 43백만 원) 대비 13.8% 감액된 1조 4,385억 90백만 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 감액분 중 재무활동(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292억 65백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 감액규모는 88백만 원임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 신규 및 증액사업 6건, 33억 7백만 원
 - 감액사업 8건, 2,334억 14백만 원
 - 국고보조금 반환 2건, 7억 54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소관부서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총 계				1,667,943	1,438,590	△229,353	
신규 및 증액사업 소계				10,610	13,918	3,307	
1	도시개발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도심재창조과)	시설비	-	220	220	2040 서울도시기본 계획 및 서울도심기본 계획 후속으로 도심부 4+1축 재정비를 통한 도심재창조 2.0 추진 및 문화재 주변 정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의 도심경쟁력 강화
2	도시개발	교부금(도시개발) (도시정비과)	장수 교부금	2,810	3,279	469	체비지 관련 징수액 증가로 자치구 교부금 증액 필요
3	일반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광화문광장사업과)	사무 관리비	284	414	130	코로나19 완화로 광장 이용객과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이 급증하여 화장실 등 시민이용시설 소모품 수요 대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조치(안전펜스) 강화 필요성 증가, 시민안전을 위한 경비인력 충원 필요
			공공 운영비	1,151	1,320	168	
			시설비	-	120	120	
4	일반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광화문광장사업과)	사무 관리비	365	415	50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국가중심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5	도시개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광화문광장사업과)	시설비	6,000	8,000	2,000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매칭된 시비 2,000백만원 편성
6	도시개발	한강 곤돌라(잠실) 추진 (동남권추진단)	사무 관리비	-	150	150	그레이트 한강(한강 르네상스2.0)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한강곤돌라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격성 조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
감액 사업 소계				1,556,401	1,322,985	△233,414	
7	일반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균형발전정책과)	사무 관리비	26	4	△22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21백만원 감액)에 따라 국비 21백만원 감소정 및 매칭시비 21만백원 감소정
			국내 여비	4	1	△3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소관부서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연구 용역비	70	53	△17	
8	도시 개발	균형발전종합 정보포털 운영 (균형발전정책과)	공공 운영비	102	75	△27	균형발전본부 내 홈페이지 (3개) 유지관리 통합발주로 사업비 절감, 불용예정액 감추경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9	도시 개발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정비과)	시설비	19	-	△19	연계사업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 사업(보훈처, 미래 공간기획관) 추진 보류로 사업예산 감추경
10	도시 개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 (도시정비과)	시설비	800	-	△800	노들 남북 고가차도 철거시기 조정(22년→ '24년 이후)에 따라 노들섬 조망이 불가 능한 상황으로 착공 보류
11	일반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시정비과)	기타회계 전출금	1,551,372	1,321,352	△230,020	23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등 세입 감소요인 발생하여 재산세 도시 지역 분(편성부서:세무과) 감추경 (안)의 70% 감액
12	도시 개발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 (동북권사업과)	시설비	3,530	1,188	△2,341	게이트볼장 건축규모 확 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필요 (연면 적 1만㎡ 이상시, 18개월소요) 에 따라, 공사착공 시기 지연
			감리비	147	-	△147	
			시설 부대비	1	-	△1	
13	도시 개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서부권사업과)	사무 관리비	112	109	△3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 공사(HUG)의 보조금 정산 지침상 국고보조금 정산 시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던 것에서 '23년부터 는 도시재생 사업 전체 준공 후 일괄 검증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 수수료 3백만원 감액
14	일반	광화문 기록화 및 홈페이지 운영 (광화문광장사업과)	사무 관리비	218	203	△15	균형발전본부 내 홈페이지 (3개) 유지관리 통합 발주로 사업비 축소, 불용예정액 감추경으로 재정운영 효 율성 제고
국고보조금 반환 소계				63	816	754	
15	일반	국고보조금 반환 (균형발전정책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35	52	17	2022년 국고보조금(지역 혁신 체계 운영지원) 집행 잔액 반납
16	도시 개발	국고보조금 반환 (광화문광장사업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28	764	737	2022년 국고보조금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집행 잔액 반납

나.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신규 및 증액사업

- “(신규)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사업별설명서 p.13/예산서 p.12) 사업은 서울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추진중인 개발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3.2월 수립된 '서울도심 기본계획5)'에 따른 후속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비 2억 2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도심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유도 중이나 도시공간 분리에 따른 지역단절, 문화재 주변 보전을 위한 높이 규제 등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도심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적·시스템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추경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⁶⁾를 이행하였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용역사 선정, 계약절차 수행 등은 물론 과업기간 역시 '24년 2월까지로 계획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과업기간 내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상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함

5) 서울도심 기본계획(서울시공고 제2023-316호,2023.2.9.)

6)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9311(2023.5.21.)) 결과 통보 : 적정

< 서울도심 위치도 >



자료 : 도심재창조과(2023.5)

- “교부금(도시개발)”(사업별설명서 p.25/예산서 p.13)사업은 자치구로 위임한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체비지 관련 수입 징수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8억 10백만 원에서 4억 68백만 원(16.7%)을 증액한 32억 78백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7)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관리를 해당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 가운데, 매각대금 징수액의 30%,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50%를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연도별 징수액이 불규칙하고 편차가 커 예산편성 시점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

7)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체비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체비지의 관리대장 보관 및 기록 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개별 체비지의 관리
 2.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학교용지 제외)에 해당하는 체비지의 매각
 3.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다만, 제1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퍼센트, 변상금 징수액의 50퍼센트, 매각대금 납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된다.

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 하반기 관악구 집단정착용 체비지 관련 징수액 급증 이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합계액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⁸⁾되는바, 2023년 교부금 증추경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고 하나 앞으로는 추경 편성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교부금을 지급하는 노력을 요함

-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사업별설명서 p.40/예산서 p.15) 사업은 광장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내 시설물 관리 및 대형 행사·집회 시 안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 26백만 원 대비 4억 18백만 원 (25.7%) 증액한 20억 44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광장운영 소모품 구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펜스 추가구매, ▲대형 행사·집회 시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인력 보강, ▲광장 바닥·터널분수 청소용역사업비, ▲광장 안전·질서 등 실시간 감시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 된 광장상황실 대형표시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하였음
 - 코로나19 감염병위기 완화와 엔데믹 선언 등으로 광화문광장 이용객과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이 급증한 상황에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23년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운영 6개월 만에 소모품구매, 경비용역, 블라드유지관리, 바닥청소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1/4 비용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 향후 본예산 수립 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해 필요·적정한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음

8) □ 2020년~2023년 체비지 관련 교부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액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액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액	최종예산(안)	본예산	추경액(안)
2,126	2,234	△107	3,350	1,666	1,684	3,019	1,666	1,353	3,278	2,810	468

-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별설명서 p.44/예산서 p.16) 사업은 광화문광장을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기정예산 3억 65백만 원 대비 50백만 원(13.7%)을 증액한 4억 15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으나, 본 사업을 계획한 목적이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와 정책에 대한 소통을 위한 사업’⁹⁾으로 계획하고 이미 시민(서포터즈, 지역주민, 광화문 일대 민간기업 등)과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별도로 시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비용을 추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사업 계획과의 차별성 및 필요성 등을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해 보임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사업별설명서 p.52/예산서 p.16) 사업은 국가중심축과 경복궁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역사광장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개설 등 역사문화공간 회복을 위한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60억 원에서 20억 원(33.3%)을 증액한 8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 사유지 보상을 위한 총 보상비는 32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2019년 서울시와 SH공사 간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¹⁰⁾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 2020년에 걸쳐 총 249억 원을 SH공사에 보상금으로 위탁한 바 있음
 -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남아있는 보상절차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

9) 2023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서울특별시) p.414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목적

10) 보상 위·수탁 계약서 제3조제8항(업무의 위탁범위):수탁자는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여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매칭사업(국비:시비=50:50)으로 확보된 국비 40억원에 대하여 미 매칭된 시비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본 추경을 편성하였음

- 현재 SH공사에서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보상 절차¹¹⁾를 고려할 때 금년 내 실제적인 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를 감안할 때 시비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신규)한강 곤돌라(잠실) 추진”(사업별설명서 p.59/예산서 p.17) 사업은 도시계획국이 총괄한 ‘그레이트 한강(한강 르네상스2.0) 프로젝트 실행계획¹²⁾’에 따라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잠실·탄천변 일대 강남·북 간수변 거점 및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위한 적격성조사 이행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1억 5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

- 소관 부서(동남권사업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실시 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전문기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요, 경제성, 사업·운영계획 등 사업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때 수수료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추경을 편성하였으므로,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일정 관리가 필요함

(2) 감액사업

○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사업별설명서 p.1/예산서 p.11) 사업은 「국가균형

11) 보상계획공고→조서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협약 안될시)→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1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계획(도시계획국-4355호(2023.5.22.))

발전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균형발전 연구용역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원 대비 42백만 원(41.7%) 감액한 58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23.1월에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¹³⁾하였고 현재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 용역¹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확정예산(91백만 원) 통보¹⁵⁾'시 당초 내시액(1억 12백만 원)¹⁶⁾ 보다 감액(△21백만 원) 통보함에 따라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국비:시비=50:50)를 감조정¹⁷⁾ 하려는 것임
 - 다만, 협의회 운영,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업예산 40% 이상 감액으로 인해 과업내용 축소 등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후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운영”(사업별설명서 p.6/예산서 p.11)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지원하는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본부 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통합 유지·관리¹⁸⁾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기정예산 1억 2백만 원에서 불용예정액 27백만 원(26.2%)을 감액한 75백만 원으로 감추경 하고자 함
 - 아울러, 균형발전본부 소관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유지·관리하게 됨에 따

13) 제3기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계획(균형발전정책과-4693(2022.12.29.))

- 구성인원: 15명(위촉직-분야별 전문가(13), 시의원(1), 임명직-균형발전기획관(1))

14)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 용역

- 연구기간: '23.5~'23.12 / - 계약기관: 서울연구원

15) 2023년도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 확정예산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320(2023.3.14.))

16) 2023년도 지역혁신협의회운영지원사업 예산(안) 임시통보(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1029(2022.9.13.))

- 1억 12백만 원이 가내시 통보되어 '지역혁신협의회 지원(50백만원)' 과 '균형발전전문요원 인력운영비((인건비)62백만원)'로 본예산 편성함

17)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인력운영비는 변경하지 않고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을 변경함

18) 균형발전본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계획(균형발전정책과-4226(22.12.16))

라 “**광화문 기록화 및 홈페이지 운영**”(사업별설명서 p.48/예산서 p.16)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2억 18백만 원 중 공공운영비 15백만 원(6.9%)을 감액한 2억 3백만 원으로 감추경 하려는 것임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gwanghwamun.seoul.go.kr)’, ‘서울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uri.seoul.go.kr(국영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sid.seoul.go.kr(국영중문(간체·번체))’ 등이 광화문광장사업과, 균형발전정책과, 동남권추진단에서 각각 운영되어 오다가 3개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을 통합 발주하여 총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 ’22.12월에 균형발전통합정보포털 통합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고려할 때 ’23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검토를 하고 각 부서별 소통을 통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면 불필요한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3개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의 중복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별설명서 p.17/예산서 p.13) 사업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18백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감추경 하려는 것임

- 효창공원 일대 재생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 사업’(보훈처, 미래공간기획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¹⁹⁾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이 사실상 보류되어,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추진하려 했던 효창 독립기념길 조성, 효창공원 앞 테마공간 조성 등의 활성화 사업이 미시행되고 사업비는 2022회계년도에 불용처리함
- 또한, ’22.12월 더 이상의 활성화계획 수립은 보류하기로 결정²⁰⁾하고 추후

19)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평가위원회(2022.6.30.)-검토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

공원사업이 재추진될 때 도시재생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용역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22.12.31 준공함으로써, 용역 연장을 위해 '23년도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려는 것인 바,

- 호창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 예산안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사업별설명서 p.21/예산서 p.13)은 ‘노들섬(한강대교)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2020.12.)’ 계획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동작구 본동 258-1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노들나루공원을 한강변 조망 특화설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원(노들나루공원 재조성 공사비)을 전액 감추경 하고자 함

□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사업계획

- 위 치: 동작구 본동 258-1(노들나루 공원)
- 규 모: 44,580㎡(관리사무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씨름장 등)
- 사업기간: '21.01 ~ '24.12
- 사업내용: 마운딩, 가로광장, 스탠드 등 공원재조성



위 치 도



현재 노들고가차도

- 이번 사업은 노들 남·북 고가차도 철거계획과 연계하여 공원 재조성을 통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고가차도 철거계획 보류²¹⁾로

20) 호창공원일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수립용역 과업내용 변경계획안(도시정비과-3661(2022.12.7.))

인해 한강 조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22.12월 설계가 완료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공사'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고가차도 철거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전액을 감추경 한 것임
 -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경우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계사업이 지연·철회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져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연계사업을 계획할 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사업별설명서 p.29/예산서 p.14)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전출금으로 세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조 5,513억 71백만 원 대비 2,300억 20백만 원(14.8%)을 감액한 1조 3,213억 52백만 원으로 감추경 하고자 함
- 2023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편성부서:재무국 재무과) 감추경(안)의 70% 감액분 2,606억 80백만 원과 2022년 결산으로 발생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의 70% 306억 60백만 원을 정산한 △2,300억 20백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사업별설명서 p.32/예산서 p.14)은 기정예산 36억 78백만원 대비 24억 90백만 원(67.6%)을 감액한 11억 88백만 원으로 감추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 게이트볼장

21) 주변 개발계획 구체화 및 노들로 구조개선사업 완료(2024년) 후 교통영향 재검토하여 노들고가도로 철거여부 검토·결정할 계획임(도로계획과-28671호(2022.10.18.))

건축규모 확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어 착공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 24억 90백만 원을 감액하는 것임

- 서울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립 부지에 존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²²⁾하기로 하고 '22.7월 게이트볼장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²³⁾, '23.4월에 신축 게이트볼장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음²⁴⁾

□ 신축 게이트볼장 부지(다락원체육공원) 현황

- 위 치: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 공원면적(개발제한구역 편입면적): 49,830m²
- 연 면 적: 7,131.88m²(건축물대장 기준)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로써 국토부 협의('16.6.10.) 후 공원 조성
- 도시계획: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²⁵⁾, 체육공원²⁶⁾

□ 신축 게이트볼장 건축 계획(설계공모 당선작 기준)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11.7m
- 건축면적: 1,022.82m² <건축면적 누계 7,429.69m²(건폐율 14.92%)>
- 연 면 적: 3,225m² <연면적 누계 10,356.88m²(용적률 20.78%)>
 - 연면적 누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기준을 356.88m² 초과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함

- 게이트볼장 이전 예정지인 '다락원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 10,000m²을 초과하는 규모로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²⁷⁾ 수립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리계획수립(4개월)과 국토교통부 승인(1.5년~2년)에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

2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 계획(동북권사업과-3321(2021.11.18.))
 23)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22.4.18~22.7.15)
 24)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설계공모 입상작 공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3-567호(2023.4.6.))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GB내 건축물의 건축은 GB관리계획을 수립 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임
 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체육공원의 경우 시설률은 50%이하, 건폐율 15%이하
 27) □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수립 기준

(’23.11월) 보다 1년 4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관련 예산 24억 90백만 원을 감추경 하고자 함

- 게이트볼장 이전·신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구 게이트볼 협회로부터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으로 게이트볼장 건립을 희망하는 의견²⁸⁾을 수렴하였다고는 하나, 2022년 수립된 기본계획²⁹⁾이나 그 해 추진된 설계공모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신축 게이트볼장 건축 규모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 사업 일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사전절차를 고려한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감추경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사업별설명서 p.36/예산서 p.15) 사업은 기정예산 1억 12백만 원에서 3백만 원(2.7%) 감액한 1억 9백만 원으로 감추경 하고자 함

- 금천구 독산동 292일대가 ’19.4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중심시가지형)’로 선정되어 국비(40%), 시비(60%) 재원 부담으로 2025년까지 우시장 환경개선 및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사업으로,
- 기존에는 국가보조금 정산 시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았으나 2023년부

구 분	반영 여부 기준	조치방법	소요기간(년)
관리계획 반영시설	형질변경면적 50,000㎡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이상	국토교통부 승인대상	1.5~2 (수요조사~)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형질변경면적 50,000㎡미만 및 건축연면적 10,000㎡미만	국토교통부 협의대상	0.5 (국토부접수~)

28) - 신축게이트볼장 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결과 알림(서울시게이트볼-33(2023.5.4))

- 다락원체육공원 신축게이트볼장에 대한 협의의견 회신(도봉구게이트볼협회-02(2023.5.8))

구 분	게이트볼장 이전 기본계획(2022.7)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건립 설계공고 설계지침(22.12.9)
29) 건축연면적	3,231.55㎡	3,231.55㎡ 이내

터는 도시재생사업 전체 준공 후 일괄 검증반도록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침³⁰⁾이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정산수수료 3백만 원을 감추경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3) 국고보조금 반환

- 2022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15,950천원) 및 이자(2,089천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별설명서 p.10/예산서 p.12) 기정예산 35백만 원에서 17백만 원(48.6%)을 증액하여 52백만 원으로 증추경 하려는 것으로, 그간 본예산 편성으로 차후년도 반납을 해오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³¹⁾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임
- 2022년 추진된 경북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별설명서 p.56/예산서 p.16)을 기정예산(28백만 원) 보다 7억 36백만 원 증액한 7억 64백만 원을 추경편성 하였음
- 2022년 사업추진 중 감리비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조기 반납을 통한 반납이자 최소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30) '23년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정산안내(23.1.국토교통부) p.6

3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심부 활성화 기본 구상 용역 및 한강 곤돌라(잠실) 추진은 상위 계획수립에 따라 후속적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비교해보면 광화문광장사업과가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사업,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31억 90백만 원) 증추경 편성하였음
- '22.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별로 추진 시기와 세부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겠음
-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운영, 광화문 기록화 및 홈페이지 운영,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의 경우 연관된 사업의 조정·폐지로 인해 감추경 예산을 편성하였고,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 불장 이전사업은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착공시기가 연기되어 감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작업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추경은 지양해야 할 것임